

안 내

급여제공 급여 및 비급여비용

1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

구 분		1등급	2등급	3/4/5등급
급여	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2,527,200원	2,344,500원	2,214,000원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 (2인실)	40,000원		
	식재료비(1식)	3,800원		
	간식비(2회/1일)	1,000원		
	이/미용료등	0		

요양 등급	수가 (원)	기준일	급여항목				
			급여총액 (원)	일반대상 (20% 본인부담)	경감대상 (12% 본인부담)	경감대상 (8% 본인부담)	기초생활 수급권자
1 등급	84,240	30일	2,527,200	505,440	303,264	202,176	납부 금액 없음
		31일	2,611,440	522,288	313,373	208,915	
2 등급	78,150	30일	2,344,500	468,900	281,340	187,560	
		31일	2,422,650	484,530	290,718	193,812	
3-5 등급	73,800	30일	2,214,000	442,800	265,680	177,120	
		31일	2,287,800	457,560	274,536	183,024	

2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.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- 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- (2) 상급침실 이용료
 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 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.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- (3) 이.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.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.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.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

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